

## 企業合併의 會計處理에 關한 考察

李 仁 鎬

工業經營科

### 〈要 約〉

近年에 企業의 合併이 많이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한 會計學의 많은 研究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定立된 意見의 一致가 없는 實情이다. 特히, 會計處理에 있어서 意見의 不一致는 풀링 法과 買收法의 對立이다. 따라서 本稿은 企業合併에 있어서의 會計上의 問題點과 會計處理에 對하여 論하고자 한다.

## A Study on the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Lee, In Ho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 〈Abstract〉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 wave of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y. As a result, various aspects o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have been examined, nevertheless, the agreement in views has not been achieved now. Speacially, the disagreement of opinion on accounting treatment is to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purchase and pooling of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blems of accounting and accounting treatment arising from business Combinations.

### I. 序 論

近代企業은 점점 大規模經營으로 大量生産을 함으로써 큰 利得을 올리려는 것이 그 特色의 하나로 되어 있다. 企業이 大規模經營화하기 위해서 資本力을 強化하고 固定設備投資를 增大하여 生産性を 提高시키고 市場을 擴大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手段으로서 가끔 企業合併의 方法이 使用되기도 한다.

合併이 때로는 市場의 獨占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公正한 競争에 따르는 公共的 利益이 侵害되고 中小企業 및 一般消費者에 對하여 否定的 弊害를 가져오기도 하나, 資本의 零細性 및 技術의 落後性

에서 벗어나 積極的인 經營合理化 및 國際競爭力 強化라는 肯定的 必要性도 있으므로 政府에서는 合併 獎勵業種을 定하여 稅制上 및 金融上 支援등 積極的 合併誘導政策을 펴고 있다.<sup>(1)</sup> 이와같은 政府의 支援과 勸獎에 힘입어 企業間에는 經營規模의 再編成을 꾀하게 되었으며 經營의 合理化를 위한 方案으로 企業合併에 對한 關心度가 높아졌다. 그러나 企業合併에 關한 會計處理에 대한 詳細한 規定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어 實務上 相當한 混亂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이와같은 問題點은 다른 어떤 會計原則, 節次, 方法보다 企業에 미치는 影響이 크며 重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企業合併에 관한 會計處理規

(1) 商工部告示, 第 78-2號, 78. 2. 8.

動力資源部告示, 第2號, 78. 2. 21.

山林廳 告示, 第6號, 73. 3. 13.

(2) 南植午, 會計理論(下), 日新社, 1979, p.1256.

정의 制定을 위한 諸方法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合併의 意義와 形態

### 1. 意義

企業의 合併이란 각각 獨立의 存在하고 있는 둘 以上의 法人이 商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따라 結合하여, 法律上 및 經濟上으로 獨立性을 완전히 喪失하고 하나의 法人으로 되는 行爲를 法律上의 合併이라고 한다. 企業合併을 넓게는 復數企業이 單數企業으로 합쳐지는 것을 總稱하는 意味로도 쓰인다.

法律上의 合併은 法定節次에 따른 法人間의 法律行爲로서 當事者인 法人의 一部 또는 全部가 解散하여 그 財産은 清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包括的으로 存續企業 또는 新設企業으로 移轉한다. 동시에 解散法人의 社員이 存續法人 또는 新設法人의 持分이나 株式를 取得하여 社員으로 되는 效果를 가진 것을 말한다.<sup>(3)</sup>

企業을 合併하는 目的으로는<sup>(4)</sup>

- (1) 競爭의 回避
- (2) 生産의 集中化, 專門化
- (3) 事業의 擴充
- (4) 經營의 多角化
- (5) 市場 占據率의 擴大
- (6) 節稅目的<sup>(5)</sup>
- (7) 製品·生産工程·原材料의 開發등이 있다.

### 2. 合併의 形態

企業合併은 分類基準에 따라 여러가지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겠으나 法律的 側面과 經濟的 側面에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法律的 區分<sup>(6)</sup>

法律上의 合併形態로서는 吸收合併과 新設合併으로 區分되어 지며 이는 合併當事者인 既存의 會社

가 合併 후에도 存續하느냐 전부 消滅하느냐에 따른 分類이다.

吸收合併(Merger)이란 合併當事者인 既存의 會社중 어느 하나가 存續하고 解散하는 다른 會社의 財産 및 株式(社員)를 吸收하는 形式으로 合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新設合併(Consolidation)은 合併當事者인 既存의 會社가 모두 解散하고 이의 동시에 新會社를 設立하여 解散하는 會社의 財産과 株主(社員)를 이에 吸收하는 形式으로 이루어지는 合併을 말한다. 解散의 性質은 吸收合併과 같으나 合併當事者인 全部被合併法人으로 된다.

이와같이 法律的 意味로서의 合併은 둘 以上의 會社가 商法의 特別規定<sup>(7)</sup>에 따른 契約에 의하여 하나의 會社로 合同하는 法律行爲를 말한다.

吸收合併은 新設合併에 비하여 그 節次가 簡便하여 企業合併의 대부분을 이룬다.<sup>(8)</sup>

#### (2) 經濟的 區分

合併當事者인 同一業種이나, 從의 系列이나에 따른 分類로서 水平合併과 垂直合併으로 區分된다.<sup>(9)</sup>

水平合併(Horizontal combination)이란 同一業種간의 單一化를 말하며 이는 同一市場의 支配를 競爭하고 있는 企業간의 合併을 일컫는다. 그 目的은 같은 分野에서 보다 큰 支配力 獲得 또는 一般管理를 비롯한 廣告, 生産, 販賣등을 하나의 체인(chain)으로 緊密하게 統合, 運營하여 經濟性을 成就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合併의 경우는 資金調達을 따로 하더라도 獨占企業體의 強化라는 結果를 가져오기 쉽다.

垂直合併(Vertical Combination)이란 特定業種의 企業과 原材料 確保 또는 販路의 確保를 위하여 原材料 供給會社 또는 販賣會社간의 合併을 말한다. 따라서 垂直合併을 하는 企業에서는 重複된 機能의 廢止와 會社간의 去來가 壓縮 또는 全廢됨에

(3) 金文洙, 企業合併의 理論과 實際, 會計와 稅務, 大韓稅務協會, 1978, 2. pp.116-117.

(4)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2, p.362.

(5) 太田佐, 藤番場監, 修會計學大辭典, 中央經濟社, 1978, pp.285-286.

(6) 미국의 경우, 法律上으로 3가지로 區分한다. 즉, (1) 吸收合併에 해당하는 併合(merger) (2) 新設合併에 해당하는 合併(consolidation) 및 (3) 他企業을 買收하는 것인 企業取得(acquisition)으로 구분한다. 南植午, 前掲書, p.1257. 參照

(7) 合併에 관한 商法內容은 合併契約(第 522, 523, 525, 603條), 合併決議(第 230, 269, 522, 598條), 會社債權者의 保護(第 231, 232, 269, 503, 603條), 創立總會召集(第 526, 527, 603條), 合併登記(第 233, 269, 523, 602, 234, 530, 603條) 參照.

(8) 1967年~1976年까지 10年間 總 173件의 合併중 新設合併은 단 1件뿐이었다.

金教昌, 會社合併에 관한 綜合的 研究(3), 司法行政, 通券 第200號, 韓國司法行政學會, 1978.

(9) 經濟的 區分으로 (1) 水平合併 (2) 垂直合併 (3) 企業合同(congeneric) (4) 混合型合併(conglomerate)로 4區分하기도 한다. Eugene F. Brigham,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ement, 2/e, The Dryden Press, 1980, p.526.

따라 生産의 能率化가 이루어져 製品을 보다 싼 값으로 販賣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므로 國際競爭力에 있어서 政府가 試圖하는 産業의 專門化 및 系列化의 推進에 副應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1)</sup>

### Ⅲ. 合併의 本質

合併의 性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合併의 本質을 人格合一說과 現物出資說로 2區分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 1. 人格合一說<sup>(12)</sup>

會社의 合併이란 2개 이상의 會社가 合해서 하나로 되는 物權의 効力を 가지는 一種의 特別한 契約<sup>(13)</sup>이라고 하여 오로지 社團의 움직임(移動)의 面에서 把握하는 것이다. 또한 合併을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의 權利 義務를 包括的으로 그대로 承繼하여 들이상의 會社가 하나로 된다고 하는 見解이다. 따라서 合併會社와 被合併會社간의 人格의 繼續性이 認定된다.<sup>(14)</sup> 이와같이 合併에서는 解散會社의 財産과 株主의 移轉收容은 이 人格合一의 結果이고 合併이란 이와같은 效果를 隨伴하는 會社간의 特殊한 契約이라고 한다.換言하면 合併은 會社간의 一種의 特殊한 契約이고 그 效果로서 解散會社가 그 社團法人으로서의 組織을 保存하면서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에 移行하여 當然히 그 株主와 財産의 全體가 이것이 包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合併에서 新株의 發行이나 會社의 設立, 株式의 配定이나 株式에 대한 出資란 것은 있을 수 없다. 解散會社의 株主가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에서 取得하는 株主인 地位는 그것이 어떻게 變容받더라도 實은 合併에 의하여 새로 取得하는 것이 아니고 解散會社에서 가지고 있었던 地位를 그대로 維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說은 合併이란 2개 以上の 會社의 合一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法律的으로는 人格의 合一이란 常識的인 觀察을 그대로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合併에 대한 法

律問題의 解決을 위한 확실한 據點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sup>(15)</sup> 또한 存續會社가 合併에 의하여 增加해야 할 資本額 또는 解散會社의 株主가 이들 會社에서 取得하는 株主의 地位는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가 承繼하는 解散會社의 純財産額(資本-負債)에 따라서 制約된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므로 人格合一說의 이러한 解釋은 곤란하다. 오히려 人格合一說의 立場은 資本이 缺損狀態에 있는 法人이라도 被合併法人의 缺損金과 資本金을 帳簿價格대로 承繼하여야 한다. 그러나 資本이 缺損狀態에 있는 法人과의 合併은 資本充實의 原則에 反하므로 一般的으로 認定되지 않는다.<sup>(16)</sup>

#### 2. 現物出資說

會社合併의 本質을 現物出資에 있다고 하여 解散會社의 營業全部를 現物出資로 하는 新會社의 設立(新設合併) 또는 資本增加로 把握하는 것이다. 즉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로 부터 承繼하는 資産을 公正한 市價로 評價하여 이로부터 承繼하는 負債額을 差減한 純資産額(合併交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金額)을 被合併會社의 株主가 合併會社에 대하여 現物出資하는 것으로 보는 見解이다.<sup>(17)</sup> 따라서 合併에 의하여 解散會社(被合併會社)의 財産이 存續會社(合併會社) 또는 新設會社에 移轉되며 이와 同時에 解散會社의 株主가 存續會社가 發行하는 株式을 받게 된다.

이와같은 現物出資說에 대한 批判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合併을 단순히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包括的인 것으로 解析되어야 한다. 둘째, 合併에 의하여 解散會社의 從業員이 當然히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에 引繼되는 것을 說明하지 못한다.<sup>(18)</sup> 셋째, 會社合併에 있어서 資本의 增加는 必然的인 것이 아니고 資本增加를 隨伴하지 않는 合併이 認定되는 것을 說明하지 못한다.<sup>(19)</sup>

지금까지 企業合併의 本質을 糾明하는 대표적인 學說인 人格合一說과 現物出資說에 대하여 살펴 보

(11) 企業合併과 産業再編成, 大韓商工會議所, 1974, pp. 113—114.

(12) 人格合併說, 人格承繼說, 會社合一說 등으로 稱하기도 한다.

(13) 朴元善, 새 商法(上), 修學社, 1973, p. 499.

李炳泰, 商法, 平定社, 1975, p. 535.

(14) 李正浩, 前掲書, pp. 365—369.

(15) 大隅建一郎, 會社合併の本質, 竹田左稀記念論文集, p. 296.

(16) 滄永洙, 企業合併에 따른 會計處理에 관한 研究, 啓明大 大學院 碩士論文, 1980, 6, pp. 10—11.

(17) 南植午, 前掲書, p. 1260.

(18) 西原寬一, 會社法, 岩波書店, 1963, p. 38.

(19) 高田源清, 會社の合併, 有斐閣, 1964, pp. 196—198.

았다. 以外에도 社員現物出資說<sup>(20)</sup>과 財産合一說<sup>(21)</sup>이 있으나 現物出資說과 거의 理論을 같이 한다.

#### Ⅳ. 合併의 會計處理

合併의 會計處理方法은 合併의 本質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人格合一說에 該當되는 會計處理方法으로 풀링法이 있고, 現物出資說에 該當되는 會計處理方法으로 買收法이 있다.

##### 1. 풀링法(The pooling of interests method)

풀링法은 持分풀링法 또는 持分共同計算法이라고도 한다.<sup>(22)</sup>

이 方法은 둘 이상의 會社가 合併할 때 각 會社의 持分(interests) 또는 株主集團(stockholder group)의 持分の 併合(fuse)되어 하나의 會社가 되는 合併會計方法이다. 즉 合併될 當事企業의 從來持분이 새로운 會社에서도 그대로 承繼되어 繼續된다는 것으로 어느 한 企業이 다른 企業을 買收한다는 입상에 있지 않고, 同等한 位置에서 從來의 持分을 그대로 合算한다고 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에서 承繼할 資産·負債는 會計處理基準의 變更이나 統一을 위한 修正을 除外하고는 被合併會社의 帳簿價額으로 承繼된다. 또한 從來의 株主는 새로운 會社에서 그대로 株主로 남는 것이며, 때로는 經營者도 새로운 會社의 經營者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풀링法의 會計處理]

##### (1) 資産·負債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에서 承繼할 資産負債는 合併을 함에 있어서 會計處理基準의 變更이나 統一에 따른 修正을 除外하고는 被合併會社의 帳簿價額으로 承繼되며 따라서 營業權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資本金

合併契約 또는 法的要件에 의해 株式이 發行된 경우 確定된 資本金이 된다. 이때 合併當事會社의 資本金을 그대로 합쳐도 不足한 경우 不足分은 利益剩餘金으로부터 移替된다.

##### (3) 利益剩餘金

利益剩餘金도 合併當事會社의 帳簿價額대로 合算,

承繼된다. 이때 合併會社의 利益剩餘金額은 각 合併當事會社의 利益剩餘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따라서 合併會社의 資本金이 合併當事會社의 資本金合計額보다 적을 때는 그 差額(合併減資差益)을 合併會社의 資本準備金으로 計上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반대로 合併會社의 資本金이 각 合併當事會社의 資本金合計額을 超過할 때는 그 超過額을 먼저 合併當事會社의 資本準備金에서 控除한 후에도 殘餘額이 있을 때는 利益剩餘金으로부터 控除되기 때문에 合併會社의 利益剩餘金額이 合併當事會社의 利益剩餘金合計額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利益剩餘金은 合併當事會社의 利益剩餘金合計額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결코 많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풀링法은 一般의 企業經營者들로부터 選好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sup>(23)</sup>

(1) 合併한 企業資産의 公正價値(fair value)가 帳簿價額보다 크면 買收法을 擇할 경우 減價償却額이 增加하므로 合併후의 合併會社 純利益은 以前에 存在한 被合併會社의 純利益을 合한 것보다 적게 된다.

(2) 풀링法의 採擇에 의해 資産의 再評價로 發生하는 株式利益額의 稀釋化(dilution)를 回避할 수 있다.

(3) 풀링法에서는 償却額, 償却期間등의 決定에 問題點이 될 수 있는 營業權의 計上을 避할 수 있다.

(4) 合併當事會社의 利益剩餘金을 그대로 合算함으로써 利益分配를 위한 配當可能額을 減少시키지 않는다.

이와같은 풀링法의 利點은 利益操作의 手段으로 利用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풀링法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批判을 받는다.

(1) 交換去來에서 重大한 意味를 갖는 營業權이나 資産의 現在價値를 認識하지 않고 企業을 取得하는 會計處理方法은 不合理하다.

(2) 풀링法은 처음에는 相對的인 持분이 同等한 企業合併에 適用하였으나 나중에는 株式交換에 依한 合併이면 規模등이 顯著히 不均衡해도 이 方法을 適用하고 實質的으로 他會社를 取得함이 분명함에 도 풀링法을 適用하고 있다.

(20) 金教昌, 前揭論文, pp. 39—40.

(21) 鄭熙喆, 株式會社合併의 本質論의 再檢討, 法學的 諸問題, 雜民回甲紀念論文編輯委員會, 1977, pp. 115—119.

(22) 南植午, 前揭書, p. 1261.

(23)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Irwin Inc., 1970, p. 546.

(3) 企業合併去來의 經濟的 實質을 정확히 反映하지 못한다. 플링法은 合併이 當事者간의 交涉에 의한 會計去來라는 點을 無視하고 있으며 合併會社는 貸借對照表의 損益計算書에 繼續的으로 影響力을 미칠 資産과 其他價額을 記錄하지 않는다.

(4) 取得한 資産과 引受한 負債金額이 發行된 株式數와 關係없이 帳簿에 記錄된다. 그 結果, 會社가 株式을 取得資産에 따라 發行하고 더 많은 株式을 發行하자면 더 많은 資産이 記錄되어야 한다는 會計理論에 合致되지 않는다.

## 2. 買收法(purchase method)

買入法, 購買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會社合併에 있어서 한 會社(合併會社)가 다른 會社(被合併會社)를 買入(購入)한다는 觀點에서 會計處理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被合併會社의 株主는 被合併會社의 財産을 合併會社에 現物出資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존재하던 被合併會社의 同質性(identity)은 消滅하는 것이다. 또한 合併會社는 被合併會社의 資産·負債를 讓受하고 이와 交換으로 現金·株式(새로운 株式發行)등을 交付하게 되는 것이다.

買收法에서는 承繼한 資産을 그 資産의 現行市場價格 또는 購入時의 去來額에서 考慮된 價値로 計上하고 承繼한 資産의 價値는 純資産의 購入으로 支拂한 代價가 된다. 이때 承繼한 資産의 價値는 그 資産의 現行市場價格 또는 被合併會社에 提供된 代價의 公正한 價値중 어느 것이던 明瞭한 것으로 記錄한다. 따라서 合併會社는 일단의 資産을 購入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純資産의 購入에 支拂한 代價를 각 個別資産에 配分하여야 한다. 이때 支拂한 代價가 각 個別資産의 總市場價値를 超過할 경우 그 超過分은 營業權이 된다. 이로 말미암아 企業合併을 買收法에 의해 會計處理하면 合併후 3년 동안 固定資産의 市價評價로 인한 減價償却費와 營業權償却이 損益計算書에 나타나게 된다.

[買收法の 會計處理]

### (1) 資産·負債

合併會社는 被合併會社의 資産·負債(또는 純資産)를 株式發行에 의한 買收의 경우 發行된 株式의 市場價値로 評價한다.(現金支給의 경우에는 現金額) 여기서 總購入原價는 個別資産·負債에 配分되며 원래의 帳簿價額과의 超過分은 營業權이 된다. 이때

個別資産에 대한 原價配分에 있어서 각 資産의 市場價値가 考慮된다. 그러나 만약 被合併會社의 資産·負債(또는 純資産)의 帳簿價額이 總購入原價를 超過하는 경우 이 超過分은 合併差益(profit from consolidation)이 되어 資本剩餘金으로 計上된다.

### (2) 資本金

合併契約 또는 法的要件에 의해 確定되어 實際로 發行된 株式의 資本金이다. 그런데 이때에 株式의 市場價値가 額面價보다 높은 경우 資本剩餘金(株式發行超過金)이 發生할 수 있다.

### (3) 利益剩餘金

被合併會社의 利益剩餘金은 合併會社의 帳簿에 承繼되지 않는다. 따라서 被合併會社의 利益剩餘金은 消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買收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主張되고 있다.

(1) 企業의 會計的 觀點에서 볼 때 新鮮한 出發(fresh start)을 한다. 단일 被合併會社의 資産이 過去에 過大 또는 過小評價되었다면 合併時에 公正市場價値로 調整될 것이고, 缺損金이 있었다면 合併으로 除去될 것이다.

(2) 대부분의 合併去來가 本質적으로 株主보다는 買收의 性格을 띠고 있다.

(3) 플링法을 사용할 때는 즉각적인 架空利益의 創造가 可能하나 買收法은 이로 인한 弊害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買收法은 또한 다음과 같은 問題點으로 批判을 받고 있다.

(1) 合併으로 消滅會社에 주어질 交付株式의 公正한 價格이나 取得한 資産의 價格이 分明치 않을 때는 取得原價算定에 問題點이 있다.

(2) 資産의 公正價値가 以前の 帳簿價格보다 높은 경우 合併후에 높은 減價償却이 나타나게 되어 수년동안 낮은 純利益을 얻게 된다.

(3) 買收法에서는 被合併會社의 利益剩餘金이 合併會社로 移越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蓄積된 利益으로 分配할 수 있는 配當可能利益이 減少된다.

## Ⅶ. 企業合併의 事例

企業合併에 있어서 會計處理方法인 플링法과 買收法の 會計原理는 前述한 바와 같다. 이러한 方法

(24) 有形固定資産은 稅法上으로 規定한 耐用期間을 適用 減價償却하는 것이 實務界에서 一般的이고, 營業權은 商法(第452條 第6項)의 規定에 따라 5年內에 償却하도록 한다.

에 의한 合併企業의 財務狀態의 差異點을 다음 事例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事例〕

A 社는 株式交付에 의해 B 社를 吸收合併하기로 하고 B 社의 舊株式 6,000株(額面價 ₩1,000)에 대한 A 社 普通株 4,000株(額面價 ₩1,000, 市價 ₩10,250)를 發行, 交付한다. B 社의 純資產은 ₩41,000,000으로 評價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現金	800,000원
受取債權	3,200,000
在庫資產	9,000,000
固定資產	23,000,000
其他資產	800,000
營業權	8,000,000
資 產	44,800,000
負 債	3,800,000
純 資 產	41,000,000원

또한 合併前 A·B 社의 貸借對照表는 다음과 같다.

貸借對照表

A 社 198×年 ×月 ×日 現在			
資 產	金 額	負債·資本	金 額
現金	2,500,000	流動負債	14,000,000
受取債權	12,500,000	固定負債	22,000,000
在庫資產	21,000,000	資本金	36,000,000
投資資產	14,000,000	資本剩餘金	4,200,000
其他資產	3,600,000	利益剩餘金	21,800,000
固定資產	42,000,000		
營業權	2,400,000		
₩98,000,000		₩98,000,000	

貸借對照表

B 社 198×年 ×月 ×日 現在			
資 產	金 額	負債·資本	金 額
現金	800,000	流動負債	3,800,000
受取債權	3,200,000	資本金	6,000,000
在庫資產	6,000,000	資本剩餘金	4,000,000
其他資產	800,000	利益剩餘金	9,000,000
固定資產	12,000,000		
₩22,800,000		₩22,800,000	

이상의 자료로서 合併후의 貸借對照表를 複寫法과 買收法의 會計處理方法에 의하여 作成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複寫法

(合併分介)

諸資產	22,800,000	諸負債	3,800,000
		資本金	4,000,000
		資本剩餘金	6,000,000
		利益剩餘金	9,000,000

위 分介에 의해 合併 후 貸借對照表를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貸借對照表

(複寫法) 198×年 ×月 ×日 現在			
資 產	金 額	負債·資本	金 額
現金	3,300,000	流動負債	17,800,000
受取債權	15,700,000	固定負債	22,000,000
在庫資產	27,000,000	資本金	40,000,000(a)
投資資產	14,000,000	資本剩餘金	10,200,000(b)
其他資產	4,400,000	利益剩餘金	30,800,000
固定資產	54,000,000		
營業權	2,400,000		
₩120,800,000		₩120,800,000	

(說明)

- a) 資本金 = A 社의 資本金 + B 社에 交付한 株式 額面  
 $= 36,000,000원 + (4,000주 \times 1,000원)$   
 $= 40,000,000원$
- b) 資本剩餘金 = A·B 社의 資本剩餘金 + 合併減資 差益  
 $= (4,2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4,000,000원)$   
 $= 10,200,000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複寫法에서는 資產과 負債는 被合併會社의 帳簿價額과 合算하여 記錄되는데 이것은 合併에 의해서 企業의 經濟的 實體가 變하지 않는다는 複寫法의 概念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在庫資產·固定資產의 再評價는 必要하지 않으며 새로운 營業權도 發生하지 않는다. 資本金이 ₩40,000,000으로 된 것은 B 社의 株主에게 交付한 株式의 額面價額(₩4,000,000)과 A 社의 資本金(₩36,000,000)이 合算된 때문이다. 資本剩餘金은

被合併會社의 資本金(W6,000,000)과 交付株式의 額面價額(W4,000,000)과의 差額(W2,000,000), 즉 合併減資差益(合併差益)이 發生하였으므로 資本剩餘金으로 計上, 增額된 것이다. 플링法에서는 原則的으로는 合併差益이 發生하지 않으나, 收益力을 考慮하여 再評價될 경우에는 合併減資差益이 發生한다.<sup>(25)</sup> 즉, 合併比率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合併差益에 被合併會社의 資本金減少額(合併減資差益)이 包含되는 것이다.<sup>(26)</sup>

(2) 買收法

(合併分介)

諸資産 44,800,000 / 諸負債 3,800,000  
 資本金 4,000,000  
 資本剩餘金 37,000,000  
 (合併差益)

위 分介에 의해 合併 후 貸借對照表를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貸借對照表

(買收法) 198×年×月×日 現在

資 産	金 額	負債・資本	金 額
現 金	3,300,000	流動負債	17,800,000
受取債權	15,700,000	固定負債	22,000,000
在庫資産	30,000,000(a)	資 本 金	40,000,000
投資資産	14,000,000	資本剩餘金	41,200,000(d)
其他資産	4,400,000	利益剩餘金	21,800,000
固定資産	65,000,000(b)		
營 業 權	10,400,000(c)		
	<u>₩142,800,000</u>		<u>₩142,800,000</u>

(說明)

- a) 在庫資産 = A 社의 在庫資産 + 再評價된 B 社의 在庫資産  
 = 21,000,000원 + 9,000,000원  
 = 30,000,000원
- b) 固定資産 = A 社의 固定資産 + 再評價된 B 社의 固定資産  
 = 42,000,000원 + 23,000,000원  
 = 65,000,000원
- c) 營業權 = A 社의 營業權 + B 社의 營業權  
 = 2,400,000원 + 8,000,000원

= 10,400,000원

d) 資本剩餘金 = A 社의 資本剩餘金 + 合併差益\*  
 = 4,200,000원 + 37,000,000원  
 = 41,200,000원

\*合併差益 = B 社의 純資産額 - 合併交付株式  
 = B 社의 資本剩餘金 + B 社의 利益剩餘金 + 合併減資差益 +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增加分\*\*  
 = 4,000,000원 + 9,000,000원  
 + 2,000,000원 + 22,000,000원  
 = 37,000,000원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增加分 = 在庫資産 增加分 + 固定資産 增加分 + 營業權 增加分  
 = 3,000,000원 + 11,000,000원  
 + 8,000,000원  
 = 22,000,000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買收法에서는 在庫資産・固定資産의 帳簿價額을 合併時 評價增한 取得原價로 計上하고 새로운 營業權이 計上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結果 帳簿價額으로 純資産(資産-負債)이 ₩19,000,000인 것을 ₩41,000,000(4,000주×₩10,250)으로 購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營業權과 같은 資産의 評價問題가 중요하게 登場하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資産은 合併時 評價되는 公正市價로 增額計上되고 引受資産의 帳簿價額과의 差額이 營業權으로 分類되어진다. 增額된 資産과 營業權의 減價償却으로 인하여 合併후에는 利益의 減少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利益剩餘金은 B 社의 利益剩餘金이 그대로 結合되지 않으므로 A 社의 利益剩餘金만을 表示하게 되고 B 社의 利益剩餘金은 合併會社(A 社)의 資本剩餘金이 된다. 따라서 合併會社의 資本剩餘金은 A 社의 資本剩餘金(W4,200,000)과 合併差益 즉, B 社의 資本剩餘金(W4,000,000), 利益剩餘金(W9,000,000) 合併減資差益(W2,000,000)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增加分(W22,000,000)등으로 構成된다. 여기에서 合併差益(W37,000,000)은 A 社가 B 社의 株主에게 交付한 株式의 市價(W41,000,000=4,000주×10,250)와 그 株式의 額面價(W4,000,000=4,000주×₩1,000)와의 差額(W37,000,000), 즉 株式發行超過金과 같으므로 買收法

(25) 鄭守永, 新會計學, 經文社, 1982, p. 262.  
 (26) 崔相文, 中級會計, 貿易經營社, 1982, p. 339.

에서는 合併差益을 株式發行差金 또는 納入剩餘金의 一種으로 본다. (72)

## Ⅱ. 關係機關의 見解

### 1. AICPAC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美國公認會計士協會)

AICPA가 合併問題를 最初로 公式的으로 다룬 것은 1950년에 會計節次委員會(CAP)가 낸 ARB No. 40 '企業結合'이었다. (28) 여기에서 企業結合을 會計上으로 佛링法과 買收法으로 分類하고 그에 따른 區別基準, 會計處理를 規定하였다. 그후 企業結合에 관한 많은 論亂이 繼續되던서 1953년에 ARB No. 43, 1957년에 ARB No. 48 1970이 妥協的인 會計規定으로 制定되다가 1970年 APB No. 16에서 오늘날 미국에 有効한 會計規定으로 確定되었다. (29)

佛링法과 買收法의 區別基準은 여러 會計規定을 거치면서 달라졌는데 佛링法의 使用은 加급적 抑制하고 買收法의 會計로 誘導하는 方向에서 規定이 制定되었다. 특히 APB No. 16에서 佛링法과 買收法의 區別基準, 會計處理公示에 대해 상세하게 規定하고 있는데 그 區別基準으로서 12가지를 列擧하고 이는 佛링法의 使用基準이 되는 것으로이 基準에 하나라도 抵觸, 違背되던 買收法을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APB No. 16의 佛링法 適用基準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 1) 合併會社의 特質

① 自律性이 있으며 合併計劃·開始전 2年이내에 한번도 相對의 子會社나 部門으로 되어 있지 않다.

② 合併會社는 相對方으로 부터 獨立되어 있을 것 (議決權 株式의 10% 以上을 갖고 있지 않을 것)

#### 2) 持分의 結合

① 單一去來로 合併計劃후 1年이내에 完了할 것.

② 實質上 모든 議決權付株式(90% 이상)과 自社의 議決權付株式과의 交換에 따른다.

③ 計劃實施후 2年이내에 또는 開始日로부터 完了日까지 議決權付株式을 變動시키지 않을 것

④ 合併이외의 目的이나 通常株式數 以上の 再取得을 禁한다.

⑤ 結合會社에서의 普通株主問의 持分比率이 合併에 따른 株式交換의 結果와 같을 것

⑥ 주어진 議決權은 無制限으로 行事할 수 있을 것

⑦ 合併完了日에 모든 事項이 確定되어 證券發行計劃등 未決事項이 없을 것, 등의 상세한 規定을 定하고 있다.

### 2.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美國證券去來委員會)

SEC는 원래 ARB No. 48의 基準을 遵守하려고 努力했으나 ARB의 思考方式이 實際로 實施되어 있는 處理와 一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글자 그대로 그 規定을 適用할 수가 없었다. SEC스텝(Staff)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適合할 수 있는 指針으로서의 論理的인 基準이 없기 때문에 取扱이 대단히 어렵다는 事實이 알려졌고 상당한 期間이 分野에서 繼續될 수 있는 方針은 없었다. 그 후 1975—76年 사이에 SEC스텝은 APB No. 16의 基準을 文字 그대로 嚴格하게 適用하게 되었다.

### 3. AAA(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美國會計學會)

1966년에 AAA가 發表한 基礎的 會計理論(ASOBAT)은 다음과 같이 佛링法을 反對하고 있다. (31) 즉, '두가지 會社의 合併이라는 중요한 市場去來에 따라 創出되는 새로운 交換價値를 本質的으로 無視하는 佛링法은 疑問이 있다. 어떤 機械를 購入할 賣主의 帳簿價額을 買主의 記錄에 그대로 끌어 들이는 것은 適切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當委員會는 이러한 去來의 대부분이 偏見에 사로 잡혀 지 말고 檢證可能性을 나타내는 充分한 證據는 들어 이러한 去來에서 생긴 適切한 交換價値를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佛링法은 使用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Ⅶ. 結 論

企業의 合併은 2個이상의 會社가 하나의 會社로

(27) 鄭守永, 前揭書, p. 26<sup>1</sup>.

(28)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0, ch. 7, Capital Accounts, Section C, Business Combinations, New York; AICPA, 1950.

(29) 編輯局, 月刊經理, 1981, 6月號, 經理社, pp. 171—174.

(30)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 16, Business Combination, New York; AICPA, Aug., 1970.

(31)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p. 33.



합쳐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法律的으로 吸收合併, 新設合併, 그리고 經濟的으로 水平合併, 垂直合併으로 區分되어 진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法律上의 合併을 意味한다.

合併에 대한 會計處理은 合併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合併의 本質에 따라 달라진다. 學說上 合併의 本質은 人格合一說과 現物出資說로 對立되고 있다. 그러나 合併의 本質을 把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그 本質의 糾明은 아예 不可能한 것이라는 見解까지 나오고 있다.<sup>(32)</sup>

合併의 會計處理方法으로서는 合併의 本質을 人格合一說에 의한 폴링法과 現物出資說에 의한 買收法이 있다.

폴링法은 W. A. Paton에 의해 主張되고 있으며<sup>(33)</sup> 合併은 合併當事會社간의 特殊한 契約으로서 合併會社가 被合併會社의 權利·義務를 包括的으로 그대로 承繼하면서 들이상의 會社가 하나로 되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被合併會社의 同一性和 人格의 繼續性이 維持된다. 따라서 會計處理도 合併當事會社는 同等한 位置에서 종래의 持分을 그대로 合算하게 된다.

買收法에서는 被合併會社의 株主가 合併會社에 被合併會社의 純資産을 現物出資하고 經營權, 株主構成 등의 대부분이 變更되어 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會計處理은 被合併會社의 純資産額을 公正時價로 評價, 合併會社는 株式으로 이를 買收(買入)하는 資本增加(吸收合併) 또는 設立(新設合併)의 形式으로 處理된다.

一般的으로 폴링法은 買收法에 比하여 前述한 利點(Ⅶ·1. 참조)이외에 租稅測面에서도 利點<sup>(34)</sup>이 있으므로 企業가들은 점차 폴링法을 選好하는 傾向이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買收法에 의한 會計處理이 妥當하다고 본다.

1) 被合併會社의 立場에서 合併去來는 모두 合併會社의 經營擴張活動이고 資本調達活動이며 대부분의 合併去來는 本質的으로 폴링보다 買收의 性格을 띠고 있다.

2) 따라서 被合併會社의 資産을 合併時 評價되는 公正市價를 無視하고 帳簿價額 그대로 合併會社의 計定에 計上한다는 것은 歷史原價會計의 原則에 어긋나는 不合理한 것이다.

3) 存續會社(合併會社)가 消滅會社(被合併會社)의 留保利益(利益剩餘金)을 承繼하고 그 金額을 存續會社(合併會社)의 計定에 合算한다는 폴링法의 妥當性은 認定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留保利益은 그 利益을 얻도록 한 企業에 대해서만 意味를 가지기 때문이다.

4) 合併會社는 被合併會社의 留保利益을 合算하고 새로운 固定資産 營業權을 計上하지 않으므로 인한 減價償却費의 過少計上등을 認定하는 폴링法은 이로 인한 架空利益이 投資大衆을 誤導하고 不當納稅에 의한 資本의 社外流出로 企業의 財務補給을 不實하게 할 수 있다.

買收法은 폴링法에 比해 어떤 形態의 合併에도 適用될 수 있으므로 廣範圍하게 適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APB. No.16에서 폴링法의 適用基準이 規定되어 있는 것은 實務上으로 폴링과 買收를 區別하기가 어렵고 폴링法의 濫用으로 인한 幣害를 抑制한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合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明確한 適用基準이 없이 제각기 다르게 合併會計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法規(商法·稅法 등)와 基準(企業會計基準)의 制定이 要請된다. 폴링法과 買收法의 區別基準이 중요한 것은 企業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1. 鄭守永,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2)
2. 崔相文, 中級會計, 貿易經營社, (1982)
3. 李芳遠, 中級會計, 貿易經營社, (1982)
4. 李正浩, 現代會計學, 經文社, (1982)
5. 南相午, 會計理論(下), 日新社, (1979)
6. 趙益淳, 現代會計學, 博英社, (1974)
7. 月刊經理, 1981年 6月號, 經理社, (1981)
8. 朴元善, 新商法(上), 修學社, (1973)
9. 李炳泰, 商法, 平定社, (1975)
10. 西原寬一, 會社法, 岩波書店, (1963)
11. 高由源清, 會社の合併, 有斐閣, (1964)
12. Eldon S. Hendrisen, Accounting Theory, Irwin Inc., (1970)

(32) 仙崎昭三, じわゆる合併本質論について, 東京商事務務研究會, 1965, p.16.

(33) W. A. Paton and W. A. Paton, Jr., Corporation Accounts and Statements, 1937, pp. 34-46.

(34) 法人稅法 第15條 1項 3號

13. W.A Paton and W.A. Paton, Jr., Corporation Accounts and Statements, (1955)      Financial Management, 2/e, The Dryden Press (1980)
14. Eugene F. Brigham, Fundamentals of